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13 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 박수민 · 이종욱 · 이인선

조지연 · 김승수 · 박수영

김선교 · 김소희 · 김장겸

임종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법률개정(2024. 2. 6.)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,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·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(이하 "공간혁신구역"이라 함)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.

개정된 법률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되,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,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지 않 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·추진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.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,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혁신 구역 도입·지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의2제3항 중 "관할"을 "직접 또는 관할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5조의2(공간재구조화계획의	제35조의2(공간재구조화계획의		
입안) ① · ② (생 략)	입안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	③		
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			
쟁력 향상, 특화발전 및 지역			
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			
때에는 <u>관할</u> 특별시장·광역시	<u>직접 또는 관할</u>		
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		
지사・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			
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			
입안할 수 있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		
	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시		
	<u>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</u>		
	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또는 군		
	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	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		